

인천지방법원 2021. 3. 3 선고 2020가단20189 판결 [사해행위취소등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

담당변호사 박은태, 김수경, 김재인, 전병주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3. 3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6 지분에 관하여 2020. 6. 17. 체결된 상속재산
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6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. 9. 9.
접수 제4053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강인혜

별지